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44호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2105호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재 무 과 2

공 고

○ 공 고 제 2 9 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능골지구 소로2-1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 시 재 생 과 5
○ 공 고 제 3 1 7 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치 수 과 6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규 칙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5년 2월 13일

남동구 규칙 제1161호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남동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

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 정수 관리 대상에 임차차량도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명 변경
- 공무용 차량 정수 관리에 임차차량 포함 및 “임차차량”에 대한 정의 : (안 제2조제1호, 제2조제5호의2)
- 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홈페이지 게재 : (안 제25조제3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2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능골지구 소로2-1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25-15호(2025.02.06.)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능골지구 소로2-1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3.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1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능골지구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B=8.0m, L=428.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2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317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경작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13.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불법경작)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2. 13. ~ 2025. 3. 3.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행 위 자		위반사항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7번지(천) 일원	미상		하천구역 불법점용(경작)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번지(천) 일원	미상		하천구역 불법점용(경작)

6. 원상회복 이행 기한 : 2025. 3. 3.까지

7. 유의사항

가. 기간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하천법」 제95조 (벌칙)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 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 남동구청 치수과 하천팀(☎032-453-84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부. 끝.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5-0000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4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4-2401호, 2025년 1월 8일 남동구 공고 제2025-62호 및 2025년 1월 24일 남동구 공고 제2025-178호로 우리 구 운연천(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및 불법경작 행위에 대하여 2025년 2월 8일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집행 시 자진 철거되지 않은 농산물 및 관련 시설물 등은 우리 구에서 귀속·폐기 처분할 예정이며, 대집행으로 인한 분실 및 훼손 등은 전적으로 그 소유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남동구 치수과(☎032-453-8464)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5년 3월 4일 09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수과	치수과장	이수화	-

남 동 구 청



2025년 2월 13일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제2025-00001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수과

직위(직급): 치수과장

성 명: 이수화

위 사람은 귀하의 「하천법」 위반행위(불법점용 및 경작)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운연동 491-7번지 일원 및 195-7번지 일원]



□ 현장사진



<운연동 195-7번지 일원(미시정)>



<운연동 491-7번지 일원(미시정)>